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09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09. 6. .

제 목 :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새마을운동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거창군의회 신 주 범 의원 (인)

거창군의회 신 현 기 의원 (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09. 06.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신주범의원외1
발의연월일	2009. 06. .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09년 월 일
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계획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붙임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기획감사실 및 행정과 합의
- 라. 기타 : 해당없음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창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거창군협의회,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